#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71

발의연월일: 2021. 8. 27.

발 의 자:유기홍・박찬대・강민정

이수진 · 서동용 · 이탄희

이형석 · 조승래 · 천준호

임호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부양·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수 있도록 「공무원연금법」 제63조제4항이 신설(법률 제17752호, 202 0.12.22. 개정, 2021.6.23. 시행)됨에 따라 「공무원연금법」 준용조항인사학연금법 제42조를 공단 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부양·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연금준용법인 「공무원연금법」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제한을 위한 심의기구 용어를 변경함(안 제42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후단 중 ""개인부담금"으로 본다"를 ""개인부담금"으로, 「공무원연금법」 제63조제4항의 "「공무원재해보상법」 제6조에 따른 재해보상심의회"는 "급여심의회"로 본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	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
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) ① 제33	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) ①
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, 급여의 사	
유,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	
관한 사항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	
28조,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, 제40	
조, 제41조, 제43조부터 제52조까	
지,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	
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8조, 제	
13조부터 제15조까지, 제19조, 제20	
조, 제22조, 제24조부터 제33조까	
지,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, 제40조	
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(위	
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	
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	
한다)을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	
"공무원"은 각각 "교직원(「공무원	
재해보상법」 제42조제1항의 재난	
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	
항의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	
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	
정,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제1항	
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	

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"으로, "공 무상"은 각각 "직무상"으로. "비공 무상"은 각각 "비직무상"으로, "순 직공무원"은 각각 "직무상사망교직 원"으로, "순직"은 각각 "직무상"으 로, "공단" 및 "인사혁신처장"은 각 각 "공단"으로, "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"은 "「공무원연금법」"으 로, "사립학교교직원"은 "공무원"으 로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4조제1항 단서 중 "제25조"는 이 법 "제31 조"로,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0조제 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 항의 "제26조"는 이 법 "제32조"로,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2조제5항의 "제31조와 제32조"는 이 법 "제36 조와 제37조"로, "기여금"은 각각 "개인부담금"으로 본다.

"개인부담금"으로, 「공무원연금	
법」 제63조제4항의 "「공무원재해	
보상법」 제6조에 따른 재해보상심	
의회"는 "급여심의회"로 본다.	